|  |  |  |
| --- | --- | --- |
|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 방법》 반포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57호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시행세칙과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의 <다(多)성시 총기구/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财预[2012]40호）등 문건 내용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반포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12월27일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및 실시조례(이하《기업소득세법》) ,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및 시행세칙(이하《징수관리법》)과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의 <다(多)성시 총기구/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财预[2012]40호）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주민기업이 중국경내 다(多)지역(복수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를 말함. 이하 동일)에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이하 ‘총괄납세기업’)이 된다.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 소득세징수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국유우정기업(중국 우정 그룹 및 그 지주회사와 직속기관 포함),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농민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은행주식유한회사, 국가개발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투자유한책임회사,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건설은행투자유한책임회사, 중국신달자산관리주식회사,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해양 석유천연가스기업(중국해양석유본사, 중해석유(중국)유한회사, 중국유전서비스유한회사, 해양석유공정주식유한회사 포함), 중국장강전력주식유한회사 등 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체납금, 위약금 포함）는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전액 중앙정부의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철도운송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총괄납세기업은 “통일계산, 급별 관리, 속지예납, 총괄 정산, 재정조정”의 기업소득세징수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   1. 통일계산은 총기구가 총괄세수기업 소속의 법인 자격이 없는 각 분지기구가 포함된 전체 과세소득액과 미납세액을 통일하여 계산함을 가리킨다. 2. 급별 관리는 총기구, 분지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현지 기관에 대해 기업소득세 관리의 책임을 지며,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기관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관리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3. 속지예납은 총기구, 분지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월별 혹은 분기별로 소재지주관세무기관에 각각 기업소득세 신고 및 속지 예납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총괄정산은 연도종료 후, 총기구가 총괄납세기업의 연도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납부 세액을 통일 계산 하여,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당해 년도에 속지분할 예납이 완료된 기업소득세액 공제 후, 과다납부액은 환급하고, 미달 납부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5. 재정조정은 재정부가 정기적으로 중앙국고에 납부한 총괄납세 기업소득세 수입을 분배하여, 계수에 따라 지방국고로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4조** 총기구와 주체 생산 경영 직능을 지닌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한다. 2급 분지기구는 총괄납세기업이 법에 따라 설립하고 非법인 영업집조(등기증서)를 수령하였으며, 총기구가 재무·업무·인원 등에 대해 직접 통일적으로 결산하고 관리하는 분지기구를 의미한다.  **제5조** 이하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1. 주체적인 생산경영 직능을 행사하지 않고, 동시에 현지에서 증치세와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는 제품 A/S·내부 연구개발 · 창고보관 등 총괄납세기업을 위한 내부 보조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2. 직전 년도에 소형이윤창출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의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3. 새로 설립된 2급 분지기구는 설립 당해 연도에 기업소득세를 속지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4. 당해 년도에 폐쇄한 2급 분지기구는 세무등기 말소 처리일이 귀속되는 기업소득세 예납기간부터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5. 총괄납세기업이 중국경외에 설립한 법인 자격을 가지지 않은 2급 분지기구는 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제2장 세금예납과 정산납부(汇算清缴)**  **제6조** 총괄납세기업은 《기업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총괄 계산한 기업소득세 (예납세액과 정산납부 납부할/환급할 세액 포함) 중 50%를 각 분지기구 간에 분담하고, 각 분지기구는 분담세액에 근거하여 국고납입 혹은 퇴고처리하며, 25%는 전액 중앙국고에 속지납입하거나 퇴고 처리한다. 구체적인 세금의 국고납입 혹은 퇴고 처리 절차는 재예[2012]40호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7조** 기업소득세의 월별 혹은 분기별 예납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구체적으로 추계한다.  총괄납세기업은 당기실제이윤액에 근거해 본 방법에 규정된 예납 분담 방법에 따라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예납세액을 계산하며,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속지 예납해야 한다. 규정기간 내에 실제이윤액에 따른 예납이 힘들 경우, 직전년도 과세표준의 1/12 혹은 1/4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본 방법에서 규정한 예납 분담 방법으로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예납액으로 계산하며,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속지 예납해야 한다. 예납방법이 확정되면 당해 연도에 확정된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총기구는 당기 기업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50%에 해당되는 부분을 월 또는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속지예납 신고 해야 한다. 총기구는 당기 기업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기타 50%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 분지기구가 분담할 수 있도록 각 분지기구에 분담 비율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각 분지기구는 매월 혹은 분기 종료 일부터 15일 이내에, 분담한 소득세액을 속지 예납 신고해야 한다.  분지기구가 세액 분배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예납하지 않아 세금의 과소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처벌 결과를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총괄납세기업 예납신고 시, 총기구는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서와 기업의 당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의 소득세 분배표와 각 분지기구의 직전년도 연도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 상황)도 제출해야 한다.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서(일부 항목만 기재)를 제출하는 것 외에,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도 제출해야 한다.  1개 납세연도 중, 각 분지기구의 직전년도 연도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상황)는 원칙적으로 1회만 제출하면 된다.  **제10조** 총괄납세기업의 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총기구는 기업의 연도 소득세 납부 세액을 총괄 계산하고, 총기구와 각 분지기구의 예납완료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환급할 세액을 산출하고, 본 방법에 규정된 세액 분담방법에 따라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세금의 국고납입 혹은 퇴고를 속지 처리해야 한다.  총괄납세기업이 납세연도 내에 예납한 기업소득세액이 연간 납부할 기업소득세액 보다 적을 경우, 확정신고납부기간 안에 총기구와 분지기구가 각각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을 납부 완료해야 한다. 예납세액이 납부세액 보다 많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세금환급을 처리하거나,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동의를 얻은 후 다음연도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이를 각각 상계해야 한다.  **제11조** 총괄납세기업은 확정신고납부 시, 총기구는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와 연도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각 분지기구의 연도재무제표 및 각 분지기구의 기업 연도 세무조정 참여상황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일부 항목만 기재)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분지기구의 연도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상황) 및 분기기구의 기업 연도 세무조정 참여상황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분지기구의 기업 연도 세무조정 참여상황에 대한 설명은,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 첨부문건인 ‘세무조정항목명세서’에 나열된 항목을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고, 총기구가 통일적으로 계산/조정해야 할 항목은 설명하지 않는다.  **제12조** 분지기구가 규정에 따라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해당 분지기구가 책임지고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으로 하여금 총기구가 규정에 따라 상술한 분배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분지기구가 신고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분지기구를 처벌해야 한다. 총기구가 분지기구에 분배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총기구를 처벌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제3장 총기구와 분지기구 분담세액 계산**  **제13조** 총기구는 아래 공식에 따라 분담세액을 계산한다.  총기구 분담세액 = 총괄납세기업의 당기 소득세 납부세액 × 50%  **제14조** 분지기구는 아래 공식에 따라 분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분지기구 분담세액 총액 = 총괄납세기업 당기 소득세 납부세액 × 50%  분지기구 분담세액 = 모든 분지기구 분담세액 총액 × 해당 분지기구 분담비율  **제15조** 총기구는 직전년도 분지기구의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 3개 요소에 따라 각 분지기구의 분담세액 비율을 계산한다. 3급 및 3급 이하 분지기구의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은 2급 분지기구에 통일 산입한다. 3개 요소의 가중치는 각각 0.35, 0.35, 0.30이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분지기구 분담비율 = (해당 분지기구 영업수입/각 분지기구 영업수입 총액)×0.35 + (해당 분지기구 직원급여/각 분지기구 직원급여 총액)×0.35 + (해당 분지기구 자산총액/각 분지기구 자산총액의 합)×0.30  분지기구의 분담비율은 상술한 방법에 따라 확정 후, 본 방법 제5조 제(4)항과 제16조 제2관·제3관의 정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않는다.  **제16조** 총기구가 주체생산경영직능을 지닌 부서(본 방법 제4조에 규정된 2급 분지기구 제외)를 설립하고, 해당 부서의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을 관리직능부서와 구분하여 결산할 경우, 해당 부서는 2급 분지기구로 간주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속지 분담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해당 부서와 관리직능부서의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을 구분하여 결산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부서를 2급 분지기구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속지분담하여 납부해서도 안 된다.  총괄납세기업이 당해연도에 조직개편 등 원인으로 인해 기타 기업에서 당해연도 이전에 존속하고 있던 2급 분지기구를 인수받는 경우, 본 기업의 2급 분지기구로 관리할 경우, 해당 2급 분지기구는 당해연도에 신설한 2급 분지기구로 간주하지 않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속지분담 납부해야 한다.  총괄납세기업 내에서 기업소득세를 속지분담하여 납부하는 총기구와 2급 분지기구 간에 합병·설립·관리등급 변경 등으로 형성된 신설 혹은 존속하는 2급 분지기구는 당해연도에 새로 설립된 2급 분지기구로 간주하지 않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속지분담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분지기구가 상품 판매, 노무 제공, 자산사용권 양도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실현한 전체 수입액을 가리킨다. 그 중, 생산경영기업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생산경영기업 분지기구가 상품 판매, 노무 제공, 자산사용권 양도 등으로 취득한 전체 수입액을 말한다. 금융기업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금융기업 분지기구가 취득한 이자·수수료·커미션 등 전체 수입액을 말하며, 보험기업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보험기업 분지기구가 취득한 보험료 등 전체 수입액을 의미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분지기구 직원급여는 분지기구가 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식의 보수 및 기타 유관 지출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분지기구 자산총액은 분지기구가 경영활동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해당 분지기구에 귀속되어야 하는 자산 합계액이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직전년도 분지기구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은 분지기구의 직전 전체년도 영업수입과 직원급여 데이터 및 직전 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자산총액 데이터로서, 국가의 통일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결산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1개 납세연도 내에, 총기구가 최초로 세금을 계산·분담할 때 사용한 분지기구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 데이터가 이후 중국 공인회계사 감사를 거쳐 확인된 데이터와 불일치 하는 경우, 조정하지 않는다.  **제18조** 세수법률, 법규와 기타 규정에 따라, 총기구와 분지기구가 소재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른 경우, 우선 총기구가 전체 소득세 과세표준을 통일적으로 계산한 후,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비율과 제15조에 따라 계산한 분담비율에 근거하여, 분지기구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자 적용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총괄납세기업의 소득세 납부할 세액 총액을 산출하며, 마지막에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비율과 제15조에 따라 계산한 분담비율에 근거하여, 총기구와 분지기구에 속지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을 분담한다.  **제19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분지기구의 연도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상황) 등에 근거하여, 주관 분지기구의 분담세액 계산비율 3요소와 계산한 분담세액 비율 및 분담 납부할 소득세액을 검사 및 대조해야 한다. 검사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를 수취한 후 30일 내에 기업의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재검토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데이터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재검토 건의를 받은 후 30일 내에 분담세액의 비율을 재검토하고, 조정 또는 기존 비율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재검토 결과를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재검토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규정된 시간 내에 재검토하지 않거나 재검토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상급세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을 처리한다.  재검토 기간에, 분지기구는 우선 총기구가 확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제20조** 총괄납세기업이 규정에 따라 분담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여, 총기구와 분지기구 간에 일방(또는 다자)의 초과납부 및 타방(또는 다자)의 과소납부가 동시에 초래되고, 총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분담하여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분담한 금액 이하일 경우, 다음 납세기간에 총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분담한 세액의 차액을 총기구 또는 분지기구로 분담하여 보충 납부해야 한다. 총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속지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분담한 금액 이상일 경우, 다음 납세기간에, 총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분담한 세액의 차액을 총기구 또는 분지기구의 분담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제4장 일상관리**  **제21조** 총괄납세기업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세무등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22조** 총기구는 모든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분지기구 포함) 정보를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내용에 분지기구 명칭·등급·주소·우편번호·납세인 식별번호 및 기업소득세 주관세무기관 명칭·주소· 우편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분지기구(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분지기구 포함)는 총기구와 상급 분지기구 및 하급 분지기구 정보를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내용에 총기구와 상급 분지기구 및 하급 분지기구 명칭·등급·주소·우편번호·납세인 식별번호 및 기업소득세 주관세무기관의 명칭·주소·우편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상술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 변경 후30일 내에 총기구와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세무등기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분지기구 세무등기 말소 후 15일 내에, 총기구는 분지기구 말소상황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세무등기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총기구 명의로 생산경영을 수행하는 非법인 분지기구가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예납신고기간 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非법인 영업집조(또는 등기증서) 복사본과 총기구가 발급한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의 유효증명서 및 유효증명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총기구 자금교부 증명서와 총기구/분지기구 협의서 또는 계약서, 회사정관, 관리제도 등 포함)를 제출하여,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의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해야 하는 2급 분지기구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즉시 속지납부 처리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24조** 총기구 명의로 생산경영을 수행하는 非법인 분지기구가,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를 제출할 수 없고, 본 방법 제23조에 규정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독립납세자로 간주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속지 납부해야 하며, 본 방법의 유관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전 관의 규정에 따라 독립납세자로 간주된 분지기구의 독립납세인 신분은 1년 안에 변경할 수 없다.  총괄납세기업이 이후 연도에 조직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분지기구는 본 방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상관 증거를 제출하고,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심사/검증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제25조** 총괄납세기업에 발생한 자산손실은, 아래 규정에 따라 공제 신고해야 한다.  (1) 총기구 및 2급 분지기구에 발생한 자산손실은, 특정항목 신고와 리스트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2급 분지기구는 총기구에도 보고해야 한다. 3급 및 3급 이하 분지기구에 발생한 자산손실은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2급 분지기구에 포함시켜 2급 분지기구가 통일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 총기구는 각 분지기구가 보고한 자산손실에 대하여, 세무기관이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스트신고 형식으로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총기구가 분지기구 소속자산을 일괄 양도하여 발생한 자산손실은, 총기구가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특별신고 한다.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2급 분지기구가 공제 신고한 자산손실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한다.  **제26조** 세수법률, 법규와 기타 규정에 근거하여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관리하는 기업소득세 특혜 사항에 대해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심사와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 검사 · 대장관리 등 수단을 통해,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7조**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괄납세기업의 기업소득세 신고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세무검사가 가능하고,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과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조사 확인 항목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통해 증가한 소득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통일적으로 계산한다.  총기구는 소득세 조사추징세액(체납금과 벌금 포함, 이하 동일)의 50%를 본 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담비율에 근거하여, 각 분지기구(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분지기구 불포함)에 분담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각 분지기구는 분담 조사추징세액에 근거하여 속지 처리하여 국고 납입한다. 총기구가 분담하여 납부하는 잔여 50% 중 25%는 속지 처리하여 국고납입하고, 25%는 전액 중앙국고에 납입한다. 구체적인 세금의 국고납입 절차는 재예[2012]40호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총괄납세기업이 소득세 조사추징세액 납부 시, 총기구는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발급한 세무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하며, 각 분지기구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세무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과 협조하여 관할하는 2급 분지기구에 대한 세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2급 분지기구에 대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도 가능하다.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관할하는 2급 분지기구에 대한 자체적인 세무검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항목은 《기업소득세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조사를 통해 증가한 소득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자가계산 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증액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를 허용하는 총괄납세기업의 이전 년도 결손금을 차감해야 한다. 총기구의 통일 계산이 필요한 손금산입항목은 분지기구가 자가 계산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2급 분지기구는 소득세 조사추징세액의 50%를 총기구에 분담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중 25%는 속지 처리하여 국고납입하고, 25%는 전액 중앙국고에 납입한다. 기타 50%는 해당 2급 분지기구에 분담하여 속지 처리하여 국고납입한다. 구체적인 세금의 국고납입 절차는 재예[2012]40호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총괄납세기업이 소득세 조사추징세액 납부 시, 총기구는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발급한 세무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하며, 2급 분지기구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세무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세무기관은 총괄납세기업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세무등기정보, 신고정보, 총기구가 발급한 분지기구의 유효 증명상황 및 분지기구 심사검증상황, 기업소득세 월(분기)예납 납세신고서와 연도납세신고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 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상황), 기업소득세액 입고상황, 자산손실상황, 세수우대상황, 각 분지기구의 기업 연도 세무조정 참여상황에 대한 설명, 세무검사 및 조사추징세액 분담/입고상황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각 성별로 총괄하여 국가세무총국 다(多)지역 경영 총괄납세기업 관리정보 교환 플랫폼에 전송해야 한다.  **제30조** 2008년 말 이전에 설립된 총괄납세기업, 2009년 이후 신규 설립된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부문과 총기구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부문이 일치해야 한다. 2009년 신규 증가한 총괄납세기업의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관리부문도 총기구의 기업소득세 관리부문과 일치해야 한다.  **제31조** 총괄납세기업은 기업소득세를 추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부칙**  **제32조** 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의 다(多)지역에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동일한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이하 ‘동일지역’) 내에서만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한 경우, 각 성·자치구·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본 방법을 참조하여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 방법을 연합 제정한다.  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의 다(多)지역에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하고, 동일지역 내에도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방법을 실행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세무총국<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기업 소득세 징수관리 잠행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8]28호), 《국가세무총국의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 소득세 징수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8]747호), 《국가세무총국의 다(多)지역 경영 외상독자은행의 총괄납세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8]958호), 《국가세무총국의 화능국제전력주식 유한회사의 기업소득세 총괄계산납부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33호), 《국가세무총국의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기업 소득세 징수관리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221호)와 《국가세무총국의 화능국제전력주식회사 소속분지기구의 2008년도 기업소득세 예납세액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674호)는 동시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예납 납세 신고서> 등 신고서에 관한 공고》(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64호)와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예납 납세신고서> 등 신고서 발표에 관한 보충공고》(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76호)의 규정이 본 방법과 불일치한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 **关于印发《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办法》的**  **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57号  为加强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的征收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中国人民银行关于印发〈跨省市总分机构企业所得税分配及预算管理办法〉的通知》（财预[2012]40号）等文件的精神，国家税务总局制定了《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办法》。现予发布，自2013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2年12月27日    **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  **征收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的征收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以下简称《征收管理法》）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中国人民银行关于印发〈跨省市总分机构企业所得税分配及预算管理办法〉的通知》（财预[2012]40号）等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居民企业在中国境内跨地区（指跨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下同）设立不具有法人资格分支机构的，该居民企业为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以下简称汇总纳税企业），除另有规定外，其企业所得税征收管理适用本办法。  　 国有邮政企业（包括中国邮政集团公司及其控股公司和直属单位）、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中国农业银行股份有限公司、中国银行股份有限公司、国家开发银行股份有限公司、中国农业发展银行、中国进出口银行、中国投资有限责任公司、中国建设银行股份有限公司、中国建银投资有限责任公司、中国信达资产管理股份有限公司、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海洋石油天然气企业（包括中国海洋石油总公司、中海石油（中国）有限公司、中海油田服务股份有限公司、海洋石油工程股份有限公司）、中国长江电力股份有限公司等企业缴纳的企业所得税（包括滞纳金、罚款）为中央收入，全额上缴中央国库，其企业所得税征收管理不适用本办法。  　 铁路运输企业所得税征收管理不适用本办法。  **第三条** 汇总纳税企业实行“统一计算、分级管理、就地预缴、汇总清算、财政调库”的企业所得税征收管理办法：  　 （一）统一计算，是指总机构统一计算包括汇总纳税企业所属各个不具有法人资格分支机构在内的全部应纳税所得额、应纳税额。  　 （二）分级管理，是指总机构、分支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都有对当地机构进行企业所得税管理的责任，总机构和分支机构应分别接受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的管理。  　 （三）就地预缴，是指总机构、分支机构应按本办法的规定，分月或分季分别向所在地主管税务机关申报预缴企业所得税。  　 （四）汇总清算，是指在年度终了后，总机构统一计算汇总纳税企业的年度应纳税所得额、应纳所得税额，抵减总机构、分支机构当年已就地分期预缴的企业所得税款后，多退少补。  　 （五）财政调库，是指财政部定期将缴入中央国库的汇总纳税企业所得税待分配收入，按照核定的系数调整至地方国库。  **第四条** 总机构和具有主体生产经营职能的二级分支机构，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二级分支机构，是指汇总纳税企业依法设立并领取非法人营业执照（登记证书），且总机构对其财务、业务、人员等直接进行统一核算和管理的分支机构。  **第五条** 以下二级分支机构不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  　 （一）不具有主体生产经营职能，且在当地不缴纳增值税、营业税的产品售后服务、内部研发、仓储等汇总纳税企业内部辅助性的二级分支机构，不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  　 （二）上年度认定为小型微利企业的，其二级分支机构不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  　 （三）新设立的二级分支机构，设立当年不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  　 （四）当年撤销的二级分支机构，自办理注销税务登记之日所属企业所得税预缴期间起，不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  　 （五）汇总纳税企业在中国境外设立的不具有法人资格的二级分支机构，不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    **第二章 税款预缴和汇算清缴**  **第六条** 汇总纳税企业按照《企业所得税法》规定汇总计算的企业所得税，包括预缴税款和汇算清缴应缴应退税款，50%在各分支机构间分摊，各分支机构根据分摊税款就地办理缴库或退库；50%由总机构分摊缴纳，其中25%就地办理缴库或退库，25%就地全额缴入中央国库或退库。具体的税款缴库或退库程序按照财预[2012]40号文件第五条等相关规定执行。  **第七条** 企业所得税分月或者分季预缴，由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具体核定。  　 汇总纳税企业应根据当期实际利润额，按照本办法规定的预缴分摊方法计算总机构和分支机构的企业所得税预缴额，分别由总机构和分支机构就地预缴；在规定期限内按实际利润额预缴有困难的，也可以按照上一年度应纳税所得额的1/12或1/4，按照本办法规定的预缴分摊方法计算总机构和分支机构的企业所得税预缴额，分别由总机构和分支机构就地预缴。预缴方法一经确定，当年度不得变更。  **第八条** 总机构应将本期企业应纳所得税额的50%部分，在每月或季度终了后15日内就地申报预缴。总机构应将本期企业应纳所得税额的另外50%部分，按照各分支机构应分摊的比例，在各分支机构之间进行分摊，并及时通知到各分支机构；各分支机构应在每月或季度终了之日起15日内，就其分摊的所得税额就地申报预缴。  　 分支机构未按税款分配数额预缴所得税造成少缴税款的，主管税务机关应按照《征收管理法》的有关规定对其处罚，并将处罚结果通知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  **第九条** 汇总纳税企业预缴申报时，总机构除报送企业所得税预缴申报表和企业当期财务报表外，还应报送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和各分支机构上一年度的年度财务报表（或年度财务状况和营业收支情况）；分支机构除报送企业所得税预缴申报表（只填列部分项目）外，还应报送经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受理的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  　 在一个纳税年度内，各分支机构上一年度的年度财务报表（或年度财务状况和营业收支情况）原则上只需要报送一次。  **第十条** 汇总纳税企业应当自年度终了之日起5个月内，由总机构汇总计算企业年度应纳所得税额，扣除总机构和各分支机构已预缴的税款，计算出应缴应退税款，按照本办法规定的税款分摊方法计算总机构和分支机构的企业所得税应缴应退税款，分别由总机构和分支机构就地办理税款缴库或退库。  　 汇总纳税企业在纳税年度内预缴企业所得税税款少于全年应缴企业所得税税款的，应在汇算清缴期内由总、分机构分别结清应缴的企业所得税税款；预缴税款超过应缴税款的，主管税务机关应及时按有关规定分别办理退税，或者经总、分机构同意后分别抵缴其下一年度应缴企业所得税税款。  **第十一条** 汇总纳税企业汇算清缴时，总机构除报送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和年度财务报表外，还应报送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各分支机构的年度财务报表和各分支机构参与企业年度纳税调整情况的说明；分支机构除报送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只填列部分项目）外，还应报送经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受理的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分支机构的年度财务报表（或年度财务状况和营业收支情况）和分支机构参与企业年度纳税调整情况的说明。  　　分支机构参与企业年度纳税调整情况的说明，可参照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附表“纳税调整项目明细表”中列明的项目进行说明，涉及需由总机构统一计算调整的项目不进行说明。  **第十二条** 分支机构未按规定报送经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受理的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责成该分支机构在申报期内报送，同时提请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督促总机构按照规定提供上述分配表；分支机构在申报期内不提供的，由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对分支机构按照《征收管理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属于总机构未向分支机构提供分配表的，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还应提请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对总机构按照《征收管理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第三章 总分机构分摊税款的计算**  **第十三条** 总机构按以下公式计算分摊税款：  　 总机构分摊税款=汇总纳税企业当期应纳所得税额×50％  **第十四条** 分支机构按以下公式计算分摊税款：  　 所有分支机构分摊税款总额=汇总纳税企业当期应纳所得税额×50％  　 某分支机构分摊税款=所有分支机构分摊税款总额×该分支机构分摊比例  **第十五条** 总机构应按照上年度分支机构的营业收入、职工薪酬和资产总额三个因素计算各分支机构分摊所得税款的比例；三级及以下分支机构，其营业收入、职工薪酬和资产总额统一计入二级分支机构；三因素的权重依次为0.35、0.35、0.30。  　 计算公式如下：  　 某分支机构分摊比例=（该分支机构营业收入／各分支机构营业收入之和）×0.35+（该分支机构职工薪酬／各分支机构职工薪酬之和）×0.35+（该分支机构资产总额／各分支机构资产总额之和）×0.30  　 分支机构分摊比例按上述方法一经确定后，除出现本办法第五条第（四）项和第十六条第二、三款情形外，当年不作调整。  **第十六条** 总机构设立具有主体生产经营职能的部门（非本办法第四条规定的二级分支机构），且该部门的营业收入、职工薪酬和资产总额与管理职能部门分开核算的，可将该部门视同一个二级分支机构，按本办法规定计算分摊并就地缴纳企业所得税；该部门与管理职能部门的营业收入、职工薪酬和资产总额不能分开核算的，该部门不得视同一个二级分支机构，不得按本办法规定计算分摊并就地缴纳企业所得税。  　 汇总纳税企业当年由于重组等原因从其他企业取得重组当年之前已存在的二级分支机构，并作为本企业二级分支机构管理的，该二级分支机构不视同当年新设立的二级分支机构，按本办法规定计算分摊并就地缴纳企业所得税。  　 汇总纳税企业内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的总机构、二级分支机构之间，发生合并、分立、管理层级变更等形成的新设或存续的二级分支机构，不视同当年新设立的二级分支机构，按本办法规定计算分摊并就地缴纳企业所得税。  **第十七条** 本办法所称分支机构营业收入，是指分支机构销售商品、提供劳务、让渡资产使用权等日常经营活动实现的全部收入。其中，生产经营企业分支机构营业收入是指生产经营企业分支机构销售商品、提供劳务、让渡资产使用权等取得的全部收入。金融企业分支机构营业收入是指金融企业分支机构取得的利息、手续费、佣金等全部收入。保险企业分支机构营业收入是指保险企业分支机构取得的保费等全部收入。  　 本办法所称分支机构职工薪酬，是指分支机构为获得职工提供的服务而给予各种形式的报酬以及其他相关支出。  　 本办法所称分支机构资产总额，是指分支机构在经营活动中实际使用的应归属于该分支机构的资产合计额。  　 本办法所称上年度分支机构的营业收入、职工薪酬和资产总额，是指分支机构上年度全年的营业收入、职工薪酬数据和上年度12月31日的资产总额数据，是依照国家统一会计制度的规定核算的数据。  　 一个纳税年度内，总机构首次计算分摊税款时采用的分支机构营业收入、职工薪酬和资产总额数据，与此后经过中国注册会计师审计确认的数据不一致的，不作调整。  **第十八条** 对于按照税收法律、法规和其他规定，总机构和分支机构处于不同税率地区的，先由总机构统一计算全部应纳税所得额，然后按本办法第六条规定的比例和按第十五条计算的分摊比例，计算划分不同税率地区机构的应纳税所得额，再分别按各自的适用税率计算应纳税额后加总计算出汇总纳税企业的应纳所得税总额，最后按本办法第六条规定的比例和按第十五条计算的分摊比例，向总机构和分支机构分摊就地缴纳的企业所得税款。  **第十九条** 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根据经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受理的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分支机构的年度财务报表（或年度财务状况和营业收支情况）等，对其主管分支机构计算分摊税款比例的三个因素、计算的分摊税款比例和应分摊缴纳的所得税税款进行查验核对；对查验项目有异议的，应于收到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后30日内向企业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提出书面复核建议，并附送相关数据资料。  　 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必须于收到复核建议后30日内，对分摊税款的比例进行复核，作出调整或维持原比例的决定，并将复核结果函复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执行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的复核决定。  　 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未在规定时间内复核并函复复核结果的，上级税务机关应对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按照有关规定进行处理。  　 复核期间，分支机构应先按总机构确定的分摊比例申报缴纳税款。  **第二十条** 汇总纳税企业未按照规定准确计算分摊税款，造成总机构与分支机构之间同时存在一方（或几方）多缴另一方（或几方）少缴税款的，其总机构或分支机构分摊缴纳的企业所得税低于按本办法规定计算分摊的数额的，应在下一税款缴纳期内，由总机构将按本办法规定计算分摊的税款差额分摊到总机构或分支机构补缴；其总机构或分支机构就地缴纳的企业所得税高于按本办法规定计算分摊的数额的，应在下一税款缴纳期内，由总机构将按本办法规定计算分摊的税款差额从总机构或分支机构的分摊税款中扣减。    **第四章 日常管理**  **第二十一条** 汇总纳税企业总机构和分支机构应依法办理税务登记，接受所在地主管税务机关的监督和管理。  **第二十二条** 总机构应将其所有二级及以下分支机构（包括本办法第五条规定的分支机构）信息报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备案，内容包括分支机构名称、层级、地址、邮编、纳税人识别号及企业所得税主管税务机关名称、地址和邮编。  　 分支机构（包括本办法第五条规定的分支机构）应将其总机构、上级分支机构和下属分支机构信息报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备案，内容包括总机构、上级机构和下属分支机构名称、层级、地址、邮编、纳税人识别号及企业所得税主管税务机关名称、地址和邮编。  　 上述备案信息发生变化的，除另有规定外，应在内容变化后30日内报总机构和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备案，并办理变更税务登记。  　 分支机构注销税务登记后15日内，总机构应将分支机构注销情况报所在地主管税务机关备案，并办理变更税务登记。  **第二十三条** 以总机构名义进行生产经营的非法人分支机构，无法提供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应在预缴申报期内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报送非法人营业执照（或登记证书）的复印件、由总机构出具的二级及以下分支机构的有效证明和支持有效证明的相关材料（包括总机构拨款证明、总分机构协议或合同、公司章程、管理制度等），证明其二级及以下分支机构身份。  　 二级及以下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对二级及以下分支机构进行审核鉴定，对应按本办法规定就地分摊缴纳企业所得税的二级分支机构，应督促其及时就地缴纳企业所得税。  **第二十四条** 以总机构名义进行生产经营的非法人分支机构，无法提供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也无法提供本办法第二十三条规定相关证据证明其二级及以下分支机构身份的，应视同独立纳税人计算并就地缴纳企业所得税，不执行本办法的相关规定。  　 按上款规定视同独立纳税人的分支机构，其独立纳税人身份一个年度内不得变更。  　 汇总纳税企业以后年度改变组织结构的，该分支机构应按本办法第二十三条规定报送相关证据，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重新进行审核鉴定。  **第二十五条** 汇总纳税企业发生的资产损失，应按以下规定申报扣除：  　 （一）总机构及二级分支机构发生的资产损失，除应按专项申报和清单申报的有关规定各自向所在地主管税务机关申报外，二级分支机构还应同时上报总机构；三级及以下分支机构发生的资产损失不需向所在地主管税务机关申报，应并入二级分支机构，由二级分支机构统一申报。  　 （二）总机构对各分支机构上报的资产损失，除税务机关另有规定外，应以清单申报的形式向所在地主管税务机关申报。  　 （三）总机构将分支机构所属资产捆绑打包转让所发生的资产损失，由总机构向所在地主管税务机关专项申报。  　 二级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对二级分支机构申报扣除的资产损失强化后续管理。  **第二十六条** 对于按照税收法律、法规和其他规定，由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管理的企业所得税优惠事项，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加强审批（核）、备案管理，并通过评估、检查和台账管理等手段，加强后续管理。  **第二十七条** 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加强对汇总纳税企业申报缴纳企业所得税的管理，可以对企业自行实施税务检查，也可以与二级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联合实施税务检查。  　 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对查实项目按照《企业所得税法》的规定统一计算查增的应纳税所得额和应纳税额。  　 总机构应将查补所得税款（包括滞纳金、罚款，下同）的50%按照本办法第十五条规定计算的分摊比例，分摊给各分支机构（不包括本办法第五条规定的分支机构）缴纳，各分支机构根据分摊查补税款就地办理缴库；50%分摊给总机构缴纳，其中25%就地办理缴库，25%就地全额缴入中央国库。具体的税款缴库程序按照财预[2012]40号文件第五条等相关规定执行。  　 汇总纳税企业缴纳查补所得税款时，总机构应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报送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和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出具的税务检查结论，各分支机构也应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报送经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受理的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和税务检查结论。  **第二十八条** 二级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应配合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对其主管二级分支机构实施税务检查，也可以自行对该二级分支机构实施税务检查。  　 二级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自行对其主管二级分支机构实施税务检查，可对查实项目按照《企业所得税法》的规定自行计算查增的应纳税所得额和应纳税额。  　 计算查增的应纳税所得额时，应减除允许弥补的汇总纳税企业以前年度亏损；对于需由总机构统一计算的税前扣除项目，不得由分支机构自行计算调整。  　 二级分支机构应将查补所得税款的50%分摊给总机构缴纳，其中25%就地办理缴库，25%就地全额缴入中央国库；50%分摊给该二级分支机构就地办理缴库。具体的税款缴库程序按照财预[2012]40号文件第五条等相关规定执行。  　 汇总纳税企业缴纳查补所得税款时，总机构应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报送经二级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受理的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和二级分支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出具的税务检查结论，二级分支机构也应向其所在地主管税务机关报送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和税务检查结论。  **第二十九条** 税务机关应将汇总纳税企业总机构、分支机构的税务登记信息、备案信息、总机构出具的分支机构有效证明情况及分支机构审核鉴定情况、企业所得税月（季）度预缴纳税申报表和年度纳税申报表、汇总纳税企业分支机构所得税分配表、财务报表（或年度财务状况和营业收支情况）、企业所得税款入库情况、资产损失情况、税收优惠情况、各分支机构参与企业年度纳税调整情况的说明、税务检查及查补税款分摊和入库情况等信息，定期分省汇总上传至国家税务总局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管理信息交换平台。  **第三十条** 2008年底之前已成立的汇总纳税企业，2009年起新设立的分支机构，其企业所得税的征管部门应与总机构企业所得税征管部门一致；2009年起新增汇总纳税企业，其分支机构企业所得税的管理部门也应与总机构企业所得税管理部门一致。  **第三十一条** 汇总纳税企业不得核定征收企业所得税。    **第五章 附 则**  **第三十二条** 居民企业在中国境内没有跨地区设立不具有法人资格分支机构，仅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以下称同一地区）内设立不具有法人资格分支机构的，其企业所得税征收管理办法，由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参照本办法联合制定。  　 居民企业在中国境内既跨地区设立不具有法人资格分支机构，又在同一地区内设立不具有法人资格分支机构的，其企业所得税征收管理实行本办法。  **第三十三条** 本办法自2013年1月1日起施行。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8]28号）、《国家税务总局关于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8]747号）、《国家税务总局关于跨地区经营外商独资银行汇总纳税问题的通知》（国税函[2008]958号）、《国家税务总局关于华能国际电力股份有限公司汇总计算缴纳企业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函[2009]33号）、《国家税务总局关于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若干问题的通知》（国税函[2009]221号）和《国家税务总局关于华能国际电力股份有限公司所属分支机构2008年度预缴企业所得税款问题的通知》（国税函[2009]674号）同时废止。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月（季）度预缴纳税申报表〉等报表的公告》（税务总局公告2011年第64号）和《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月（季）度预缴纳税申报表〉等报表的补充公告》（税务总局公告2011年第76号）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按本办法执行。 |